

## 부산광역시사하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안사유

- 부산시 도로점용료 조례개정으로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시 연8퍼센트 이자율을 적용하였던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6퍼센트 이자율로 하향 조정하였음
- 이에 따라 우리구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 분할납부 이자율을 부산시 조례와 동일하게 개정코자 함

### 2. 관계법령

- 도로법 제43조,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

### 3. 주요골자

- 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8%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2항의규정 (현재 연6%로 하향조절) 적용으로 개정코자 함

### 4. 검토의견

본 조례개정건은

-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이자율을 연8%에서 연6%로 조정 시행하므로써 대민부담 경감과 위민봉사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
- 특히 부산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1조제2항단서규정과 동일한점을 감안한다면

위 조례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.

2003년 12월

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 금 배